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제23조 관련)

구분	보호구역	보호구역 도해(예시)
1. 정치망어업	가. 어장의 바다 쪽 중앙 보호구역은 각각 어장 길이의 연장선 이내의 수면. 다만, 바다 쪽 보호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어장의 좌우측 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 쪽 중앙보호구역의 좌우측 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 이내로 하되, 2,6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어장의 길이는 (가)기점에서 (나)기점 또는 (라)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을 측정한다. 2) 어장의 너비는 (가)기점에서 (라)기점 또는 (나)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을 측정한다.
2. 마을어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장의 배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의 보호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북위 34도36분32.7초, 동경 127도39분18.8초)와 여수시 돌산읍 돌산항(북위 34도36분46.9초, 동경 127도43분12.5초)을 잇는 선 안쪽의 가막만 해역에만 정할 수 있다.